■ 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[별표]

수습본부상황실 실무반의 편성 인력 및 기능·역할 기준(제9조 관련)

구분		편성 인력(명)	기능·역할(임무)
수습본부상황실	상황 총괄반	반장(1명) 반원(4명)	1.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2. 수습 추진사항 총괄 및 관리 3. 수습본부회의 소집·운영 지원 및 관리 4. 수습상황 전파 5. 주요 인사 수습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등 주관 6.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관리 및 연락체계 유지 7. 그 밖에 수습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습본부장이나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본부장 또는 상황실장(이하 “부본부장등”이라 한다)이 지시하는 업무 수행
	수습 관리반	반장(1명) 반원(2명)	1. 피해정보의 수집 및 수습상황 분석자료 작성 2. 주관재난·사고 현황, 진행상황 판단 및 분석 3. 상황판단 등 의사결정 지원 4. 피해상황 조사 및 피해금액 산정 총괄 5. 피해지원 대책 및 복구계획 수립 6. 관계기관과의 수습활동 협업 7. 그 밖에 수습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습본부장이나 부본부장등이 지시하는 업무 수행
	대응 협업반	반장(1명) 반원(2명)	1. 수습본부 상황근무 명령 2. 수습본부 상황실 운영장비 설치·지원 및 근무자 후생 관리 3. 상황실 출입통제 및 수습본부 상황실 운영지원 4. 관계기관 파견근무요청 및 근무상황 관리 5. 그 밖에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습본부장이나 부본부장등이 지시하는 업무 수행
	홍보 지원반	반장(1명) 반원(2명)	1. 재난방송 요청 2.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방송상황 모니터링

			3. 우수・미담사례 등 모니터링 4. 수습에 필요한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전파 5. 보도 및 취재지원 6. 보도자료 작성・배포 및 언론브리핑 지원 7. 그 밖에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습본부의 대변인이 지시하는 업무 수행

※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,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・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・재산 피해의 규모 등에 따라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 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.